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 13

다. 상 정 일 자 : 2005. 1. 21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용현

나.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1972. 6. 23 조례 제299호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 2002. 5. 16 조례 제1728호로 화순군수리계조례가 제정되어,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와, 화순군수리계조례가 중복 관리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에 폐지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안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폐지조례안은 「화순군수리계조례」와 중복 관리되고 있기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 임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화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 13

다. 상 정 일 자 : 2005. 1. 21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나. 제안사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정지역(안 제2조)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되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기준(안 제5조)

(1) 우선 지정 지역

(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생비가 필요한 지역

- (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 (다) 학교·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 (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등

(2) 지정 금지 지역

- (가)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나)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 (다) 상수원보호구역
- (라)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권역·조수보호구역
- (마)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 (바)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사)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 (아)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등

○ 지정규모(안 제6조)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

○ 지정계획 수립(안 제7조)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전에 토지이용상태,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위치, 입주가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의견 수렴(안 제8조)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 사전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지정절차(안 제9조)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함.

○ 지정·고시(안 제10조)

지정 또는 변경시 지정목적, 지정면적, 입주가능업종, 위치도, 편입조서, 변경사유 등을 군 공보에 게시하여야 함.

○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안 제11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가능지역을 변경하지 못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조례제정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선행하였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